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소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구축 배경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도급·가맹) 현장간담회에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들은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유통)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49.3%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요구 (중기중앙회, '14.11월)

하도급법·유통업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를 익명으로 알릴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익명제보센터란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15.3월~)

* 하도급·유통 분야('15.3월~), 가맹 분야('16.3월~)

- 적용 대상 : ①하도급법, ②대규모유통업법, ③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접속 방법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

익명성 보장 조치

제보부터 사건처리 全 과정에서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호

-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
  (익명제보센터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도 없음)
- 제보자의 IP 주소도 수집되지 않음
- 조사과정에서도 피제보자가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조치함
  (제보된 특정거래에 대한 위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제보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익명제보 사건처리 절차

접수	분류	예비 검토	조사시기·방법 결정	조사진행
익명제보 센터	하도급·유통업법·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익명제보 선별	조사가 필요한 익명제보 선별	조사시기·방법은 익명성보호원칙을 감안하여 결정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 (예: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

❖ 익명제보 중에는 음해성 제보나 허위 제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보된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여부 결정

* 참고로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 상황, 결과 등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곤란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실명으로 신고・조정 신청하거나 이미 처리・조정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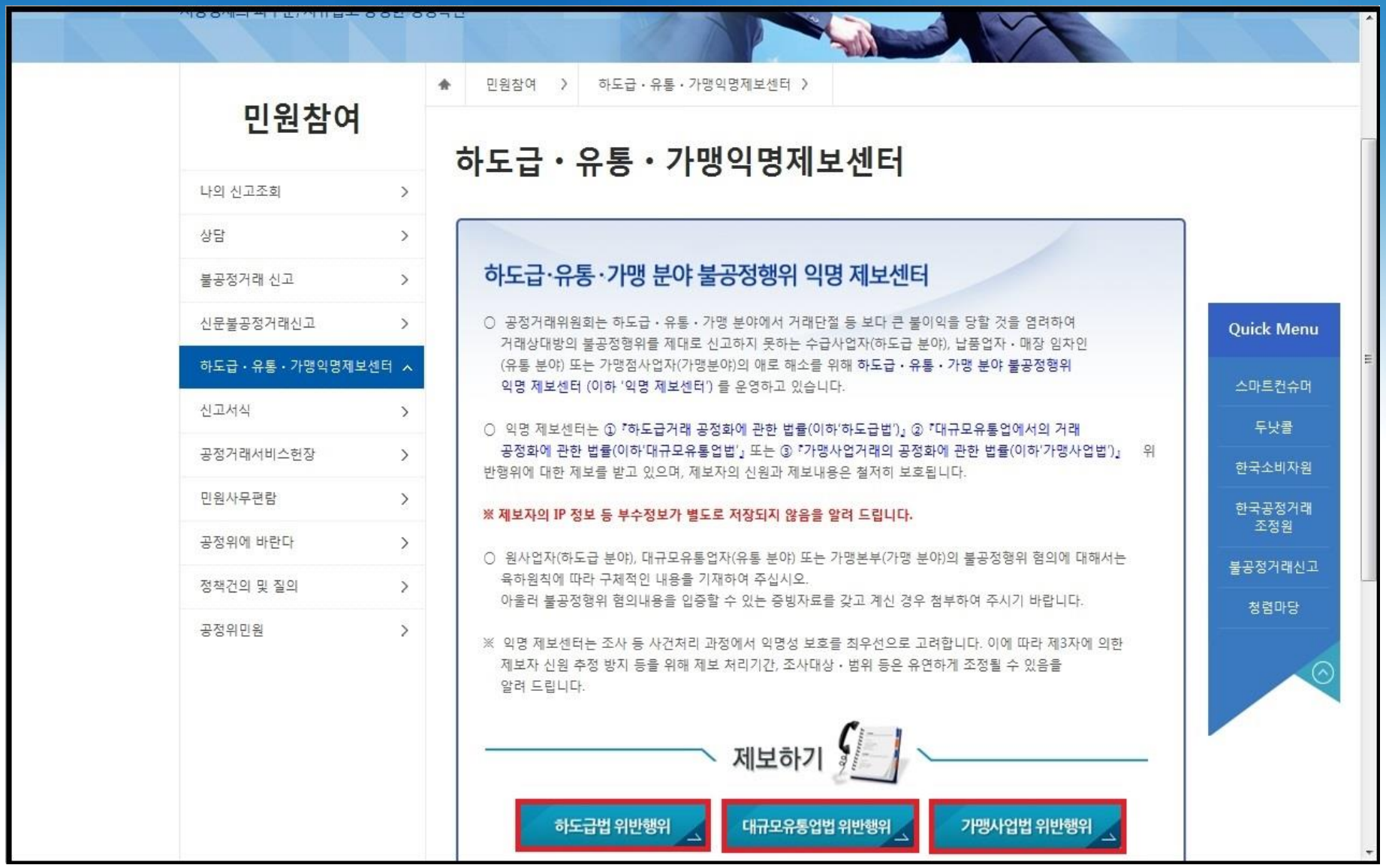

민원참여

- 나의 신고조회
- 상담
- 불공정거래 신고
- 신문불공정거래신고
- 하도급 · 유통 · 가맹익명제보센터
- 신고서식
- 공정거래서비스헌장
- 민원사무편람
- 공정위에 바란다
- 정책건의 및 질의
- 공정위민원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 가맹익명제보센터 ›

하도급 · 유통 · 가맹익명제보센터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에서 거래단절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하도급 분야), 납품업자 · 매장 임차인(유통 분야) 또는 가맹점사업자(가맹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센터** (이하 '익명 제보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 제보센터는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 또는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사업자(하도급 분야), 대규모유통업자(유통 분야) 또는 가맹본부(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제보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제보 처리기간, 조사대상 · 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하기

하도급법 위반행위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Quick Menu

- 스마트컨슈머
- 두낫콜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불공정거래신고
- 청렴마당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불공정하도급거래 익명 제보

[대표적인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①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③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④ **(감액)**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제목				
불공정행위	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첨부파일	찾아보기...			
불공정행위 내용 *제보서 내용 샘플 [바로가기]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확인 취소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불공정유통분야 제보

[대표적인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① **(서면 미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② **(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③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규모유통업자의 주도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예: 사은품,경품제공, 1+1, 에누리, 바겐세일 등)에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④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⑤ **(경영정보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 관련 정보,판촉행사 정보,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⑥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물품의 구매를 강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제목				
불공정행위	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따라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첨부파일		찾아보기...		
불공정행위 내용 *제보서 내용 샘플 [바로가기]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확인 취소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불공정가맹분야 제보

[대표적인 가맹사업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제2항]

②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③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④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 · 장비 · 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⑥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제목				
불공정행위	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첨부파일		찾아보기...		
불공정행위 내용 등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확인 취소